

#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관리요령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관리규정 제 24 조제 2 항에 의거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대상분야) 이 관리요령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의 대상분야는 초고속정보 통신망에 접속· 활용될 응용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기술로, 선도시험 망에서 시연가능한 기술분야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관리전담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말한다.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선정한 연구 개발사업 대상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를 주 도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참여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당해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능력과 연구경험을 갖춘 자로서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 장 관리기관 등

제 4 조(관리기관)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2. 연구과제제안 /수행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선정
3.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관리 및 사업결과의 평가
4. 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관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조(관련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의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제 4 조에 의한 관리기관에 분야별로 관련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련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 6 조(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자체분담연구비 부담, 연구인력의 투입 및 시설, 연구기자재 등의 사용
2. 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
3.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제출

제 7 조(참여연구 기관) 참여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협력
2. 연구개발사업비의 분담연구비 부담

제 8 조(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연구과제 제안서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의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결의
5.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 3 장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공고 등

제 9 조(연구개발사업 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사업년도 개발사업의 규모 및 정보통신 진흥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제 10 조(연구과제제안서의 제출) 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신청기간내에 연구과제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1년이상 계속적으로 연구개발 할 과제(이하 "계속과제"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제안서의 검토, 조정 및 심의) ① 관리의 장은 제 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심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체검토, 조정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조정 및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의 목표 실현가능성
2.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이용도
3. 선도시험방에서의 시연계획
4.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③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장은 유사 또는 동일한 과제제안에 대하여는 당해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여 공동연구로 조직화하고 제안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관련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조정 및 심의를 완료한 때엔 제안서별 심의의견, 연구개발사업비 조정내역, 지원 우선순위 등의 선정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 제 4 장 연구개발사업비 등

제 12 조(연구개발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연구과제제안서 또는 수행계획서 제출시 당해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거나 관

리기관이 이를 검토, 조정할 경우에는 관리지침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관이 그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조(출연금의 지원정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당 정부출연금은 제 16조에 의한 계약당시의 당해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형태와 연구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세부내역은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 14 조(참여기업 부담금의 부담형태) ① 연구개발 사업비중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물 또는 현금부담으로 인정한다.

1. 연구인력 : 소속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체 연구기자재의 시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
3. 연구시설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체 연구시설비 또는 보유 연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
4. 시약 / 재료 : 연구개발 수행에 사용되는 사체 시약 및 재료 등의 시가

## 제 5 장 연구개발사업 계약의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 등

제 15조(연구개발사업 확정통보) ① 장관은 제 11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장관과 연구개발사업관리 총괄협약을 체결하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과 연구과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제안, 심의 선정 기타 이와 관련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6조(계약의 체결) 제 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이 확정되어 관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계약의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8조(계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연구개발을 차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 1항의 계약해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재 등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 제 19 조(연구개발사업비 등의 지급) ① 장관은 관리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비를 지급하되, 연구 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연구개발사업비 소요 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제 1 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주관연구기관에게 당해 연구개발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 제 20 조(연구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 기관은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목별로 사용하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되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관리기관의 장이 당해 연구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6 장 개발결과의 보고, 평가, 활용 등

- 제 21 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개발결과보고서 및 동 보고서 요약문에 자체평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가 계속제안인 경우에는 시연평가계획서를 과제종료일 1개월 이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보고서 또는 시연평가계획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와는 별도로 관리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현황,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 22 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시기, 평가 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한다.

- 제 23 조(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 책임자는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당해년도에 기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차기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개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을 종료한 후 연구개발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

하는 금액은 환수한 후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4 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보고서의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대표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5 조(기술료의 징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 2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자로부터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실시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아래각호와 같다. 다만, 개발기술의 보급확산 등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면제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다.

1.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의 10%(단, 개발자가 실시자인 경우는 면제)
2. 실시사용료는 과제성과의 활용으로 발생된 매출액의 2%

제 26 조(기술료의 사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적립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지적재산권 등) ①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산업 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판권은 관리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공동 소유로 하며, 이에 대한 관리(지적소유권등록, 실시권 부여 및 잉여 등)는 관리기관이 총괄관리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를 변제시는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중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28 조(비밀유지 의무 등) 연구과제의 선정, 수행 및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